

광주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19가합52213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고흥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현, 박철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목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익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본석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6. 10.

## 주 문

1. 피고와 B협동조합 사이에 2019. 2. 12.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의 B협동조합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9년 제204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교부

1) B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14. 2. 27.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D 일원 E단지 내에 F물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원고는 소외 조합의 제안을 수용하여 2014. 2. 28. 전라남도를 통해 중소기업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였고, 중소기업청장은 이 사건 사업을 보조금 교부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으로 선정하였다.

2) 원고는 소외 조합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간접보조사업자로서 2016. 6. 21.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자 2016. 6. 24. 소외 조합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하고 2016. 6. 27. 보조금 15억 원(이하 ‘이 사건 제1차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소외 조합은 2017. 12. 11. 재차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7. 12. 14. 보조금 6억 9,1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차 보조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차, 제2차 보조금을 총칭하여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소외 조합 명의의 G 주식회사(이하 ‘G은행’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고, 2017. 12. 15. 소외 조합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취소와 보조금 반환 통지

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는 2018. 10. 16. 이 사건 사업의 변경결정 안건을 심의하였는데, 심의 결과 건립 · 운영지원대상 자격요건 미충족 및 부지조성 지연 등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취소를 가결하였다.

2) 소외 조합과 피고는 2019. 2. 12.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C 증서 2019년 제204호로 피고가 소외 조합에게 2017. 11. 23. 3억 원을 변제기 2019. 2. 18.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자·지연손해금은 약정하지 않으며, 소외 조합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2019. 2.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타채974호로 소외 조합의 G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4) 원고는 2019. 3. 18. 소외 조합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22조 등에 의하여 2017. 12. 14.자 이 사건 제2차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보조금을 2019. 4. 8.까지 반환할 것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제2차 보조금 중 일부인 393,894,100원을 환수하였다.

#### 다. 감사원의 감사 및 원고의 보조금 교부결정 등 취소 처분

1) 감사원은 2018. 11. 26.부터 2018. 12. 14.까지 이 사건 사업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원고 및 관련 공무원 등이 부적정한 행정처리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2019. 4. 1. 원고 등 관계 기관장에 대한 시정요구 및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를 의결하였다. 위 시정요구에는 농식품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1) 장관에 대하여 보조금관리법 제30조 제2항 및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교부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감사원은 2019. 6. 28.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계 기관에 위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를 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9. 7. 18. 전라남도지사를 경유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보조금관리법 제30조 제2항 및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 및 그 발생이자를 회수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3) 원고는 2019. 9. 10. 소외 조합에게 보조금관리법 제33조 등을 근거로 2016. 6. 27.자 이 사건

제1차 보조금 교부결정, 2017. 12. 14.자 이 사건 제2차 보조금 교부결정을 각 취소하고, 각 교부된 보조금을 2019. 10. 10.까지 반환할 것(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과, 이 사건 보조금 6억 9,100만 원과 그 이자에 대해서는 기 별도 환수 통보하였으나 본 처분으로 대체함’을 통지하였다.

4) 원고는 2019. 10. 21. 소외 조합에게 이 사건 사업이 중소기업부장관으로부터 취소 통보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취소 처분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 21억 9,100만 원과 이에 대한 발생이자를 환수하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관련사건 판결 및 원고의 재처분

1)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종전 처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아5434호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9. 12. 18. 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소외 조합은 2019. 12. 4.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5363호(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20. 8. 20. 이 사건 종전 처분은 원고가 처분의 이유를 적법하게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외 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관련사건의 피고인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20.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사유와 법적 근거를 밝히면서, 이 사건 제1차, 제2차 보조금 교부결정을 각 취소하고, 각 교부된 보조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20. 12. 31.까지 반환할 것을 재차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이에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2021. 1. 21.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224호로 시행자지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또한 소외 조합은 같은 날 같은 법원 2021아502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은 2021. 2. 5. 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1) 사해행위취소

가)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관한 관련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소외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보조금 반환 채권이 존재하며, 사해행위 당시에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보조금 반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원인이 되는 피고와 소외 조합 사이의 대여금 변제의 약정에 대한 합의(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한다.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처분을 예상하고 이 사건 보조금이 금융기관에 예치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고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이다.

### 2)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이의

피고와 소외 조합 사이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는 소외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보조금 반환 채권이 있는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소외 조합을 대위하여 청구이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1) 사해행위취소

가)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사건에서 패소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이 사건 보조금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이 사건 제2차 보조금 반환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서, 이 사건 제2차 보조금 반환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피고는 소외 조합에 대한 2017. 11. 23.자 대여금 채권 3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소외 조합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행사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보조금의 상당 액수가 소외 조합의 G은행 계좌에 남아 있었으므로, 소외 조합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외 조합과 통모한 사실이 없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 2)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이의

피고는 소외 조합과 통모한 사실이 없다.

##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

####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참조).

#### 2) 판단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2019. 2. 12.에 행해졌으며, 이 사건 제2차 보조금 반환 채권은 그 이후인 2020. 11. 23.자 이 사건 처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제2차 보조금 반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업은 2018. 8.경부터 사업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 2018. 8. 27. 사업취소 검토

보고가 있었다. 이후에도 사업 취소 및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다가 2018. 10. 16. 이 사건 사업의 변경 여부를 논의하는 이 사건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사건 운영위원회에서는 소외 조합의 이사장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I이 출석하여 운영위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사업의 취소가 가결되었다.

② 감사원은 2018. 11. 26.부터 2018. 12. 14.까지 이 사건 사업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원고 및 관련 공무원 등이 부적정한 행정처리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소외 조합으로서도 위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의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처분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종전 처분은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취소되었으나, 이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이었다. 행정청으로서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관련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적인 하자를 보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④ 원고는 2020. 11. 23.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이 사건 제2차 보조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였다. 행정처분은 그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소송 등의 적법 절차를 거쳐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1) 관련 법리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참조).

## 2) 판단

이 법원의 2019. 9. 3. 순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2020. 11. 11.자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조합은 2017년도에는 총 자산 730,411,480원 중 부채가 645,288,470원, 자본금은 84,806,812원인 사실, 2018년도에는 총 자산 730,727,356원 중 부채가 645,288,470원, 자본금은 85,438,886원인 사실, 소외 조합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소외 조합의 G은행 계좌에 이 사건 보조금이 입금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보조금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환수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적극재산으로 산정할 수 없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7. 11. 23. 소외 조합에게 3억 원을 이 사건 사업의 물류센터 개장 후 1년 후에 변제받기로 하고 대여해 주었고, ②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위 3억 원에 관하여 소외 조합이 피고에게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③ 피고는 2019. 2. 12. 작성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2019. 2. 25.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④ 피고는 이 사건 보조금이 입금되어 있는 G은행 계좌에 추심을 시도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가 소외 조합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보조금을 실제로 추심하여 우선변제 받고자 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피고와 소외 조합의 합의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행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인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으로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소외 조합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이자·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조항만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비교적 신속하게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에까지 나아갔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원고는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청구하였을 뿐, 별도로 원상회복 청구를 하지 않았다).

### 4. 청구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채권자대위 청구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차 보조금 반환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며, 그 변제기는 2020. 12. 31.인 사실, 소외 조합이 무자력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소외 조합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소외 조합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이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통정허위표시 성립 여부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다266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에서 피고의 사해행위에 관한 악의가 추정되기는 하지만, 수익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소외 조합과 피고가 통모하여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조합과 피고가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경, 판사 차유나, 판사 오정민

1) 중소기업청은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었다.